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신뢰도 제고, 구비 서류 제출 간소화에 따른 농업인 불편 해소,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업무 수행 등 목적으로 관계기관·단체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를 추가하여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공을 제한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·변경 신청 시 공동경영주 자격 요건 검증 및 농업 관련 시설의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, 농업재해 발생 현황 분석, 가축방역 및 사료 품질관리 업무 활용 등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신뢰도 제고, 구비 서류 제출 간소화에 따른 농업인 불편 해소,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·단체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를 추가함(별표 3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2호 중 “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”를 “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 축산농장, 같은 법 제10조”로 하고, 같은 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표 제9호 중 “지역가입자”를 “지역·직장가입자”로, “관한”을 “관한 정보,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가입자의 요양 개시 연월일·요양일수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관한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61호 중 “포함한다)”를 “포함한다)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(도축업, 집유업, 식용란선별포장업으로 한정한다)”로 하며, 같은 표 제62호 중 “등록에”를 “등록,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및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에”로 하고, 같은 표 제69호 중 “장기임대차사업 및”을 “장기임대차사업,”으로, “매입·매도사업”을 “매입·매도사업 및 같은 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연금사업”으로 하며, 같은 표에 제72호부터 제7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건축법」 제20조제6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,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5항에 따른 위반

건축물 관리대장에 관한 정보

72. 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27조에 따른
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국민연금
보험료 지원에 관한 정보

73. 「도로교통법」 제137조제5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진위 확인에
관한 정보

74. 「사료관리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의 등록, 같은 법 시행
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료성분등록대장, 같은 규칙 제20조제6항에
따른 사료수입신고수리대장, 같은 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른 검사수거
처리대장, 같은 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료검정대장 및 같은 규칙
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관한 정보

75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에 관한
정보

76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4조의4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
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재난안전에 관한 정보

77. 「종자산업법」 제37조제1항에 따른 종자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
37조의2제1항에 따른 육묘업의 등록에 관한 정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□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[별표3] 관계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(제20조의2제1항 관련)	□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[별표3] 관계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(제20조의2제1항 관련)
1. (생략) 2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가축분뇨 및 퇴비·액비의 처리의무,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퇴비 액비화기준 등,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 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,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신고 및 같은 법 제37조 의2제1항·제3항에 따라 전자인계관리시스 템에 입력된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· 인수,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정보 3. 「건축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에 관한 정보 4. ~ 8. (생략) 9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조에 따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해당 여부에 관한 정보 10. ~ 60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 2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, 같은 법 제10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3. 「건축법」 제20조제6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대장,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대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5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에 관한 정보 4. ~ 8. (현행과 같음) 9. ----- 지역·직장가입자의 해당 여부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가입자의 요양 개시 연 월일·요양일수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70조 에 따른 보수월액에 관한 정보 10. ~ 60.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61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농장(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관한 정보	61. ----- ----- ----- -----포함한다) 및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(도축업, 집유업, 식용란선별포장업으로 한정한다)----- -----
62. 「축산법」 제6조에 따른 가축의 등록,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, 같은 법 제17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수정소의 개설신고 및 수리, 같은 법 제22조제1항·제3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정보	6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등록,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및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-----
63. ~ 68. (생략)	63. ~ 68. (현행과 같음)
69.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해당 여부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각호의 사업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·매도 사업에 관한 정보	69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장기임대차사업, ----- ----- 매입·매도 사업 및 같은 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연금사업에 관한 정보
70. ~ 71. (생략)	70. ~ 71. (현행과 같음)
< 신설 >	72. 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27조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국민

현행	개정안
비고 : (생략)	<u>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정보</u> 73. 「도로교통법」 제137조제5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진위 확인에 관한 정보 74. 「사료관리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의 등록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료성분등록대장, 같은 규칙 제20조제6항에 따른 사료수입신고수리대장, 같은 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른 검사수거처리대장, 같은 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료검정대장 및 같은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관한 정보 75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에 관한 정보 76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4조의4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재난안전에 관한 정보 77. 「중자산업법」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자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육묘업의 등록에 관한 정보 비고 :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	
연 락 처	(044) 201 - 1162